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7회 임시회(2024. 4. 1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복지도시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24-41 |
|----------|-------|

2024. 4. 15.
전문위원 신준호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남해석 의원 외 5명
- 나. 제안일 : 2024. 4. 2.
- 다. 회부일 : 2024. 4. 3.

2. 제안이유

- 마포구는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(시행 2020. 6. 4.)한 바 있음.
- 이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국한하지 않고 다회용품의 적극적인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다회용품’의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2조)
- 나. 다회용기 등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지원과 환경우수업체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기타

1) 입법예고 : 2024. 3. 26 ~ 2024. 4. 2. 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청장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됨.

나. 주요 조문 검토

- 안 제2조 제2항의 ‘다회용품’의 개념을 횡수에 구애받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포괄하는 등으로 규정하여 알기 쉽게 정의함.
- 안 제5조 지원사업은 지정된 환경우수업체 홍보사업뿐만 아니라 마포구 차원의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관내 소각장 추가 설치 문제와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가운데 다회용품의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.
- 아울러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르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 금지와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,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사료됨.

| | |
|------|-------|
| 전문위원 | 신 준 호 |
| 주무관 | 박 철 호 |

[관 계 법 령]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다만,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2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·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(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6.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

제10조의3(재정적 지원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
2. 다회용기(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)를 회수·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